

### 〈붙임 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자동차의 **운행제한장치 설치 내용과 관련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여 이용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장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내용 삭제(안 제7조)
- 나. 인용조항 해당없음에 따른 삭제(안 제8조제6호)
- 다. 인용조항 해당없음 및 인용조항 변경에 따른 수정  
(안 제8조제7호)
- 라. 공유주차 구획 운영내용 추가(안 제12조2)
- 마. 공영주차장주차 요금표 비고란 공유주차구획 이용요금 내용 추가  
(안 별표 1)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8조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 합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1) 제 정 안 : 별첨

- (2) 입법예고 : 2015. 8. 13 ~ 9. 1(예정)
- (3) 규제심사 : 개정계획 수립시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시행
- (5) 부패영향평가 : 별도 시행

## 5. 행정영향 분석

### < 운행 제한장치 설치조항 삭제 >

#### 가. 현실태 및 문제점

『주차장법』에서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한 것과 달리,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운행제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차량 소유자의 경제활동 제한

나. 개선방안 : 법령 근거없는 규제 삭제

#### 다. 영향분석

##### ○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법령 근거없는 차량 소유자 경제활동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함

##### ○ 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

- 법령 근거없는 규제 삭제로 합리적인 행정업무 수행

### < 주차장 공유사업 >

#### 가. 일반현황 및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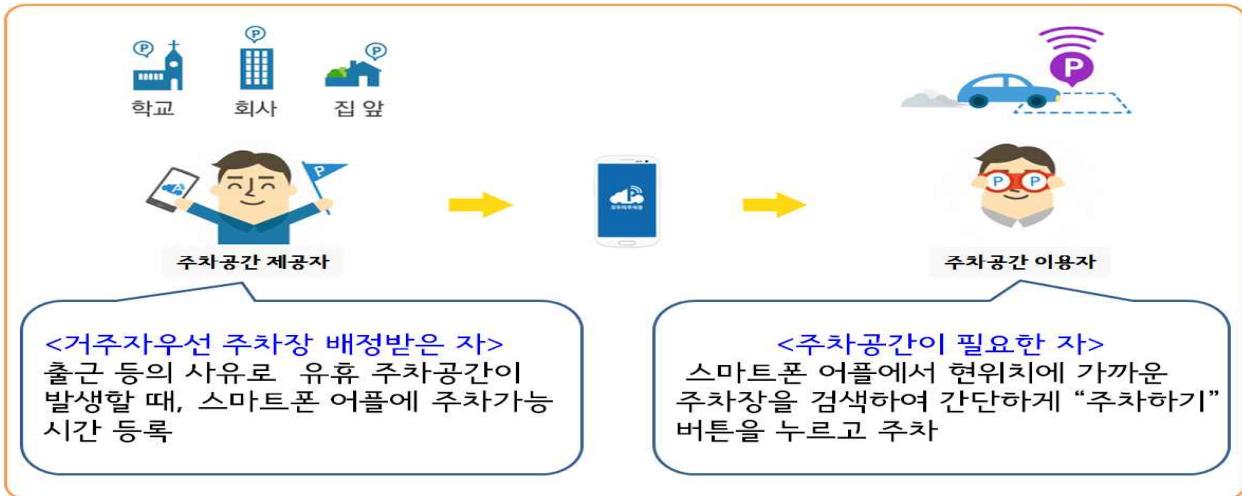
우리구는 인구 40만명, 등록차량대수 10만여대, 주차면수가 9만구획으로 주차 수급율이 90%이나 아파트 등 밀집지역을 제외한 일반주택의 경우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여 비어있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필요성 대두

## 나. 문제점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의 87.7%가 전일(24시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배정자가 출근 등 차량운행으로 비어있는 주차공간이 있어도 배정받지 못한 주민은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

## 다. 개선방안

- 주차장 공유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가 빈 공간을 제공할시 주차공간이 필요한 일반주민이 이용함
- 주차장 공유방법



## 라. 영향분석

-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비어있는 시간대의 주차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감소 및 정당한 주차공간 이용
  - 주차장 공유를 통한 지역주민간 공동체 의식 함양
- 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
  - 주차난 해소 및 불법주정차 감소를 통한 주차질서 확립
  - 주차장 공유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 및 공유문화가치 창출
  - 주차면 증설 투자예산 절감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를 삭제한다

제8조(주차거부의 금지) 제6호를 삭제한다.

제8조(주차거부의 금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7.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유 주차구획 운영)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전용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이하 “공유 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 공유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주차공간 공유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는 공유 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 요금표 비고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공유 주차구획 이용시 1구획의 주차요금은 기본 30분당 600원, 추가 10분마다 200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